

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(용도지역)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1. 제안이유

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지방2급 인노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정 하천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, 구미 도시관리계획결정(용도지역)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음.

2. 주요내용

□ 용도지역 변경

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
- 용도지역 변경 : 자연녹지지역 ⇒ 제2종일반주거지역
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내용

구 분	위 치	용 도 지 역	규 모	비고
기 정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3,323㎡	지방2급하천 인노천
변 경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	3,323㎡	주거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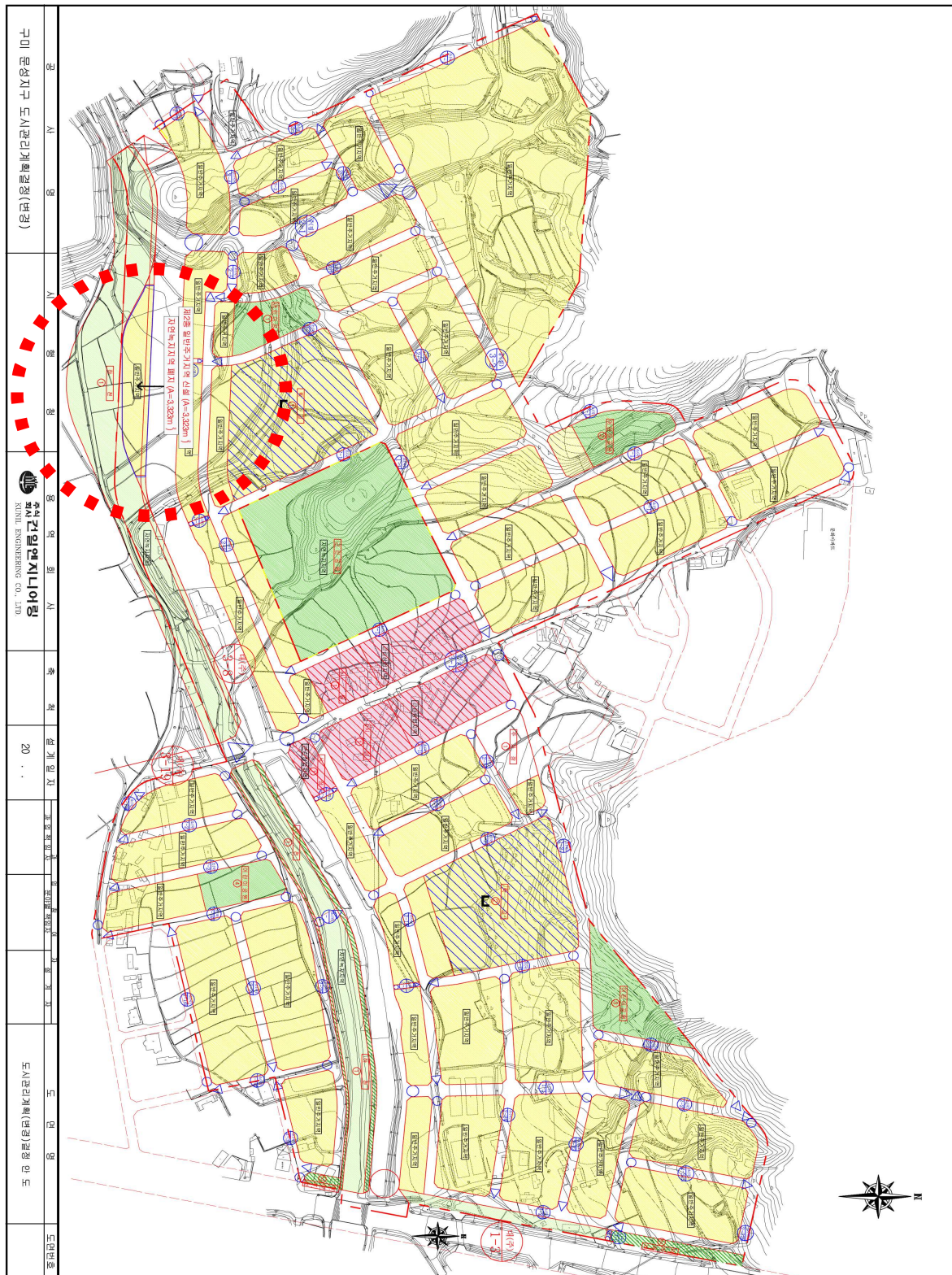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 변경사유

- 구미 도시계획('78. 2. 14)결정시 원호 - 문성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-8호선과 평행하게 계획되었으나 경상북도 지방2급하천 인노천 하천정비기본계획('05. 11. 25)에 의해 직강의 지양 및 재해예방차원으로 하천수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 (하천시설)부지에 대한 토지이용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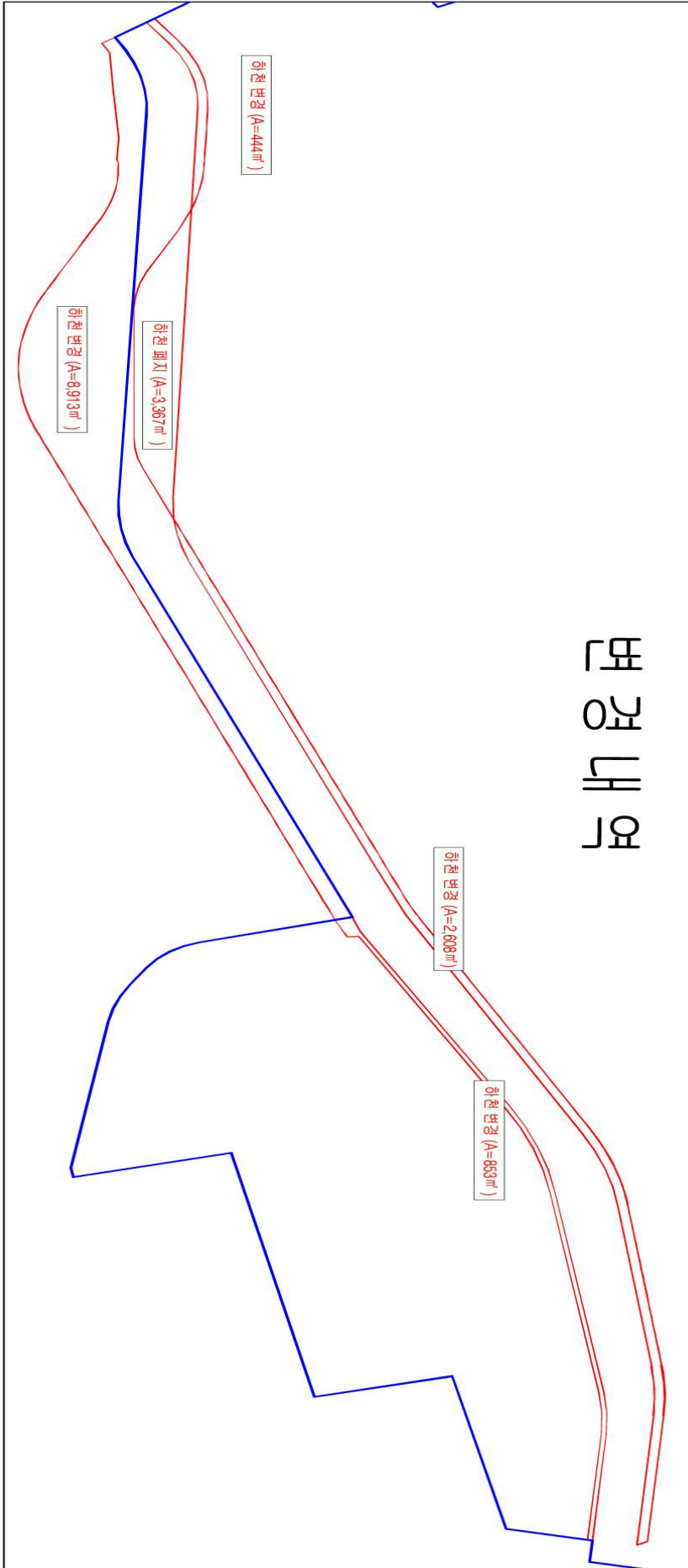
3. 참고사항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

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



변경내역



의회 의견청취 설명자료

□ 의견 청취 사유

지방2급하천 인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해 하천계획선이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민원해소와 도로신설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통행로 확보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

□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일원(지방2급하천 인노천)
- 면 적 : 376,412m²(113.8천평)
- 사 업 비 : 26,261백만원
- 사업기간 : '04. 6. 8 ~ '07. 6. 9
- 시 행 자 : 문성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류진석
- 수용인구 : 1,620세대(4,860명)

□ 인노천 현황

구 분	시 종 점	연 장(m)			면 적(m ²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시설결정 (인노천)	문성동1046-1번지 ~괴평동 544-1번지	3,600	-	3,600	123,328	증)9,451	132,779	
사업구역 (인노천)	문성동1046-1번지 ~문성동 616-1번지	960	-	960	24,000	감)3,367	20,633	사업구역
						증)9,451	33,451	사업구간

▶ 하천폭원 : 최소20m, 최대28m ⇒ 최소20m, 최대47m

▶ 하천폐지(3,367m²)=제2종일반주거지역편입(3,323m²)+녹지존치(44m²)

□ 기타사항

- 환지계획 인가조건시 사업지구내 인노천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지구내 대한 구미도시계획재정비('04. 4. 8) 및 세부 시설 내용과 상이하게 결정될 시에는 반드시 사업시행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(변경)인가를 득하여야한다고 조건제시

□ 참고법령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①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(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